REACH 시스템“ 두렵지 않다 ”

일본, 대화-비난 양면대응 전략 … 심사 · 규제제도 강화로

유럽이 신화학제품 규제(REACH 규제) 제도를 확정해 화학제품 수출이 문제시되고 있다.

RESCH 제도는 유럽시장에 존재하는 약 3만가지의 기존 화학물질(한해 제조량 1톤 이상) 규제를 신규 화학물질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비자를 포함한 산업계가 리스크 평가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REACH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EU 수출용 화학제품의 시험비용 부담이 증가하거나 부담증가로 인해 수출을 중단하는 등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학제품을 포함한 관련제품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에 진출한 화학기업들도 시험비용 부담의 증가, 재료의 전환, 생산의 역외탈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규제안의 검토단계에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EU 측과 계속 의견을 교환해 2003년 10월 말에는 유럽위원회가 성형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규제부품에 대해 등록대상물질을 크게 한정시키는 등 일정 부분 개선됐다.

그러나 규정의 애매함이나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국가의 규제에 비해 지나치게 사전에 규제하는 등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 인간의 건강보호와 환경보전 목적 자체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실현하기 위한 방법

일본 · EU의 화학물질 심사 · 규제제도 비교

		일본(개정화학물질심사규제법): 2004년4월시행	EU(신규칙안REACH): 2-3년이내 시행예정
목 적		사람이나동물에미치는피해를미연에방지 (환경오염에 따른피해방지에한정)	사람의건강과 환경보호(직접화학물질에 접촉한 노동자 및소비자보호포함)
개별화학물질의 취급	심 사	사전심사(신규)/안전성점검(기존)	등록(Registration)·평가(Evaluation)
	신규물질	○제조 · 수입량이 1톤이상이면신고의무화 ○사업자가 신고시(사전)에유해성데이터제출 ●국가가사전에유해성유무심사 ○ 사전심사시에는 리스크 평가를실시하지않음 ○제2종 특정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에대해서는국가가리스크평가 실시	○제조 · 수입량이1톤이상이면 등록의무화 ●사업자가등록시(사전)에 유해성 데이터 제출 ○ 100톤이상의화학물질에대해서는 가입국이사후에제출내용을평가
	기존물질	○3년에한번씩 제조 · 수입량이1톤이상인화학물질의 실태조사실시 ○국가가제조 · 수입상황이나구조식을판단해차례로유해성데이터를취득하고유해성유무를점검함. 일정요건을충족하는화학물질을감시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제조 · 수입 · 사용상황에서필요하면국가가제조 · 수입사업자에게추가적인유해성데이터제출을지시함 ○사업자가스스로취득한유해성정보의보고를새로의무화함 ○OECD 각국과의협조, 민관의연계에따라계획적인점검을추진 ○제2종 특정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에대해서는국가가리스크평가 실시	○제조 · 수입량이일정량에달한 단계에서등록을의무화함(등록의무화 수량을단계적으로 낮춰 1000톤을초과하면 시행후 3년, 100톤을초과하면시행후6년, 1톤을초과하면시행후 11년) ●사업자가등록시유해성데이터제출 ○ 100톤이상의 화학물질에대해가입국이사후에제출내용을평가 ●사업자가등록시리스크평가제출 ○ 100톤 이상의화학물질에대해 가입국이사후에제출내용을 평가
	규 제	[제조 · 수입규제] ○난분해성, 고축척성, 사람이나동식물에대한독성에착안해단계적으로 규제(물질수는 현행화학물질심사규제법에서의대상물질수) ●제1종특정물질(난분해, 고축척, 만성독성) - 금지(13개물질) ● 제2종특정물질(난분해, 저축척, 만성독성) - 제한(23개물질) ● 제1종감시물질(난분해, 고축척) - 감시 ●제2종감시물질(난분해, 저축척, 사람의만성독성우려) - 감시(676개물질) ●제3종감시물질(난분해, 저축척, 동식물의독성) - 감시	[인가(Authorization)] ●다음의 물질(약 1400개물질)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 리스크가적절히관리되는경우에한해개별적으로인가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 ●난분해성, 고축척성, 독성물질 ●매우 심한난분해성, 고축척성 물질 ●위의 내용과 같은정도의우려가있는 물질
완제품 중 화학물질의 취 급		○완제품중화학물질에대해서는심사하지않음 ○제1종특정화학물질을함유하는지정제품은수입금지	●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 악영향을미치는화학물질이 1톤이상 방치될때는 등록을의무화함 ○규제는개별화학물질과동일

‡●표시는한쪽이다른쪽보다엄격한조치를취하고있는항목

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필요한 방안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민-관이 일체가 돼 APEC 등을 통해 국제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EU와의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나갈 방침이다